

산 립 청 시 정 요 구

제 목 산지복구비 면제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정선군

내 용

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복구비”라 한다)을 예치하게 하고 있고,

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, 사방시설, 하천, 제방,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·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으로 정하고 있다.

따라서 정선군(○○○○과)은 2015. 9. 1. 정선군(○○○○과)이 신청한 산지전용 허가 협의(정선군 ○○읍 ○○리 000번지, 26,307㎡) 건의 경우,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(산림청 고시 제2015-25호, 2015. 4. 10)에 따라 산정한 산지복구비 116,584,00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6,546,690원의 납부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

정선군(○○○○과)은 2015. 9. 7. 산지전용허가(○○○○○○○○장)를 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6,546,690원은 2015. 12. 25.까지 납부토록만 하고, 산지복구비는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‘석유비축 및 저장시설·방송통신설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·공공용

시설(액화석유가스 저장 시설, 저공해자동차 연료 공급 시설)의 설치'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아래 [표] “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”처럼 산지 복구비 116,584천원을 면제하였다.

[표]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

시·군	소재지	허가현황				복구비 현황		정당복구비 (천원)	미예치액 (천원)
		기간	용도	면적 (㎡)	수허가자	예치액 (천원)	예치일		
정선	○○읍 ○○리 000	2015.9.7. ~2016.9.30	캠핑장	26,307	정선군수 (○○○○과장)	-	-	116,584	116,584

조치할 사항 정선군수는

미예치한 산지복구비 116,584천원을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에 따라 예치하도록 하시기를 바라며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.